

## **논 술 고 사** 문제지

## <인문계/영미문화계/EU문화계/동아시아문화계>

수험번호	지 원	   성 (	명
	모 십 단 위		

## ■ 유의사항

-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함.
-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답안 이외의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또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문제 1: 40%, 800~1000자>

##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나]와 [다]의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

[가] 인류는 비록 각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화의 차이를 뛰어 넘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가치 또한 존재한다. 구체적 예로는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을 들 수 있다. 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인간은 인종, 피부색, 성별 혹은 종교와 정치상의 의견 차이, 출신, 재산등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각자가 가진 특수성을 넘어 모두가 하나의 지구촌 구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나] 유럽적 보편주의와 보편적 보편주의 간의 싸움은 현재 세계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며, 그 결과는 다음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진입하게 될 미래의 세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어느 편이든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구 전역에서 제기된 모든 특수주의적 관념이 똑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초특수주의자(super-particularist)의 입장으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초특수주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세계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유럽적 보편주의 세력과 현재의 강자들에게 은밀하게 굴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세계체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세우려면, 우리는 보편적 보편주의, 즉 성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보편주의를 선언하고 제도화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개념,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기초했음을 근거로 내세우는 서구 문명의 우월성, '시장'에 대한 복종의 불가피성, 이 모두는 우리에게 자명한 관념들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그것들은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한 복합적인 관념이며, 소수가 아닌 만인에게 소용이 되고 온당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유해하고 비본질적인 요소가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념들이 애초에 어떻게,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주장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은 이러한평가 작업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

국제연합은 1948년에 그 이데올로기적 중심 항목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내세웠다. 그것은 유엔의 거의 대다수 회원국에 의해 추인되었는데 이는 국제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회원국이 원칙적으로 신봉하는 일련 의 이상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관한 정부 간의 관심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많은 이른바 비정부기구들(NGOs)이 출현하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지키 기 위한 직접 행동의 짐을 떠맡았던 NGO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한편에는 '국제 사면 위원회'로 대표 되는 부류가 있다. 이 위원회는 개인에 대해 남용되는 불법적인 구금의 사례를 공론화하는 데 전념했다. 국 제적으로 여론을 결집하여 압력을 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나 다른 정부들을 통해, 제소된 정부의 정책 변화 를 유도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다른 한편에는 '국경없는 의사회'로 대표되는 부류가 있다. 이 단체는 '국제적 십자'의 주요한 전략적 방패막이가 되어왔던 중립성이라는 망토를 걷어내 정치적 분쟁지역에서 직접적인 인 도적 원조를 도입하려고 애썼다. 이러한 비정부활동은 특히 1970년대에 시작되어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널리 확산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권공세는 국제 차원의 새로운 활동에 의해 추동력을 얻었다. […]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세 차례의 중요한 직접적 개입이 있었는데, 인도주의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명 분으로 삼아 한 정부가 다른 정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취했다. 개입자의 관점에서 명분은 인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입자들은 국제법상 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해도, 정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 동했기 때문에 자연법의 견지에서 윤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주장했고 또 그렇게 믿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폭 력적인 수단의 사용만이 명백한 악을 박멸할 수 있다는 구실로 개입자 모두 그들이 속한 사회뿐 아니라 세 계체제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승인을 받았다. […] 문명인에게는 야만성을 억압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기초한 인권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이메뉴얼 월러스틴, 『유럽적 보편주의』

[다] 국제연합이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1948년은 국제 인권 규범이 탄생한 해였다. […] 우리는 국제 인권 체제의 발전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개념은 나치 전범들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연합군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서, 이 말은 어떤 극한적인 적개심이나 전쟁 상황 아래서라도 국가 관료나 개인을 나눌 것 없이 모두가 반드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일정한 규범이 있음을 명백히 한다. 인종청소, 대량살상, 강간, 그리고 적군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무차별적 또는 조직적 공격'을 가할 때 쓰이는 수족 절단형 무기 사용 등을 금지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비록 그가 국가 관료이든 아니면 과거에 관료였든 간에 상관없이, 또한 그가 명령을 받아 수행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할 충분한 이유에 대한 인정 등을 포괄한다. 군인이나 관료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단지 나의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말이 더이상 타자(他者), 특히 그 타자가 적군일 경우, 타자의 인격에 기초한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법 내에 이와 같은 범주들이 꾸준히 새롭게 재규정되면서, 특히 국가 간 무력충돌상황에 적용되던 것이 내전이나 어떤 정권이 그 국민에 대해 이런 가혹 행위를 하는 경우로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론과 관행은, 보스니아와 코소보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자행되었던 범죄와 인종청소를 막고자 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서 비롯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주권적 민족국가라도 자국민의 일부에 대해 종교와 인종, 이방인, 언어 그리고 문화 등을 이유로 기본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경우, 이와 같은 집단 살해와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편적 도덕적 의무가 인류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이 경우 인권 규범이 국가 주권을 상회하는 것이다. 그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쨌든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가 주권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이나 거류민의 생명과자유 그리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무조건적, 무제한적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여론의 확산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 주권이 더 이상 시민이나 거류민의 운명에 관한 최종 심급일 수 없는 것이다. 국가 주권의 국내적 행사라 할지라도 점차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범, 즉 집단 살해와 인종 말살, 대량 추방, 노예화, 강간, 그리고 강제 노동 등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에 종속되는 것이다.

- 세일라 벤하비브, 『타자의 권리』

제시문 [가] [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라]의 입장에서 [다]를 평가하라.

[가] 타인의 존경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나 권력을 그저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나 권력은 타인에게 증거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존경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 극빈층을 포함한 사회의 어떤 계층도 모든 관례적인 과시적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는 한 과 시적 소비를 겨냥한 물품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밖으로 있어 보이는 체 하려고 허세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 까지 비참할 정도의 옹색과 불편조차도 참아내는 것이다. […]

자기 보존 본능을 제외하고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은 아마도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동기일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는 경쟁적인 비교 성향이 부의 경쟁으로 표현된다. 이는 최소한 서구 문명사회만 두고 보아도 과시적 낭비의 어떤 형태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다면, 과시적 낭비 욕 구는 사회의 산업 효율성 혹은 재화 산출의 증가를 모두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토스타인 베블렌, 『유한계급론』

[나] 가장 이상스러운 것은, 그들 주변의 나무나 여타 것들의 위치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들은 아무 것도 지나쳐 갈 수 없는 듯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건가?' 앨리스는 갈수록 궁금증이 더했다. 그러자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레드 퀸(Red

Queen)이 소리쳤다.

"더 빨리 뛰어! 말할 시간이 어디 있어!" […]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고 놀랐다.

"참 이상타. 우린 내내 이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이야?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잖아!"

"물론이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레드퀸이 막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숨가 빠하면서 앨리스가 말했다. "우리처럼 만일 누가 그렇게 한참을 빨리 달렸다면 보통은 다른 어딘가로 가게 되는데."

"느려빠진 나라로구나!" 레드퀸이 말했다. "자 이제, 네가 보듯이, 여기서는 단지 같은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너는 온힘을 다해 달려야 해."

- 루이스 캐롤, 『거울 나라의 앨리스』

[다] 귀족제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부유층이 그들의 풍요함에 익숙하듯이 일반 평민들도 자신들의 가난에 익숙해진다. 부유층은 물질적 안락을 별 노력 없이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집착하지 않으며, 평민들도 자신들의 물질적 불편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안락은 막상 얻을 방도도 없거니와 애초에 그런 것을 바랄만큼 충분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신분적 위계질서가 모호해지고 특권이 철폐될 때, 세습가산(世襲家産)들이 작게 나뉘고 교육과 자유가 사회 내에 퍼져갈 때, 가난한 평민들은 안락을 열망하게 되고 부유층은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한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중간 소득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물질적 안락의 맛을 알기에 필요한 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만족할만큼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물질적 안락을 노력 없이 얻지 못하며 불안 없이 즐기지 못한다. 따

라서 이들은 자꾸 달아나버리려는 이 불완전하고도 귀중한 즐거움을 쫓고 유지하는 일에 끊임없이 매달리게 된다. […]

[19세기 초반] 미국사회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행복한 여건을 갖춘, 가장 자유롭고도 잘 교육받은 시민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미간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은 잔뜩 심각하거나 슬픈 기색마저 띠고 있다. 사람들이 심각한 이유는 자신이 견뎌낸 지난 세월의 어려움에 대해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며,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성취할 뻔 했지만 놓쳤던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곱씹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혹시 성공을 위한 지름길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조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기이한 일이 아닐수 없다. […]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안달하는 수많은 행운아들의 광경을 목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광경이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다. 지금 새로운 것은 바로 한 사회의 성원들 모두가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라] 우리는 행복이 모든 좋음[善]들 가운데 가장 선택할만한 것이라 보지만, 좋음들 가운데 하나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으로서,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표이다. 우리는 행복을 탁월성[德]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 규정할 수 있다. […] 이 활동은 관조(觀照)적인 활동이다. 이것은 활동 가운데서도 최고의 활동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지성이 최고이며,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앎의 대상들 중 최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활동이 가장 연속적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위하는 것보다 더 연속적으로 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행복에는 즐거움이 섞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들 중 지혜에 따르는 활동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 따라서 관조가 지속되는 만큼 행복도 지속되며, 더 많이 관조하는 사람에게 행복도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고, 우연에따른 행복이 아니라 관조에 따른 행복이 더 많이 귀속되는 것이다. 관조는 그 자체로 영예로운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어떤 종류의 관조일 것이다.

물론 행복한 자도 인간이라 외적인 유복함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관조를 위한 자족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관조를 하려면] 육체도 건강해야 하고 음식이나 여타의 보살핌이 존재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비록 외적인 좋음들이 없이 지극히 복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행복하게 되기위해 많고 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족이나 그에 따른 행위는 지나침이 없을 것이며, 비록 땅과 바다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귀한 것들을 행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 적당한 정도의 외적조건들만 갖추어도 탁월성에 따라 행위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 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다. 탁월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 테니까. '행복한 사람'이란 외적인 좋음들이 적당하게 주어져 있으나 자신이 가장 훌륭한 행위로 여기는 것을 행했으며, 또 절제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솔론이 말했을 때, 아마도 그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잘 그려낸 것일 터이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들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행해야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때문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